

2025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15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1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등록된 지역 농·감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
<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>
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
2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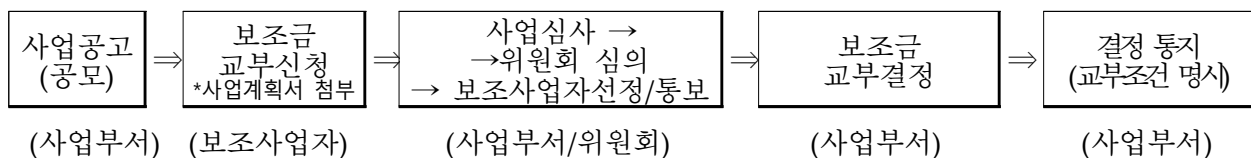
- 지원비율: 도비 60%, 자부담 40%
 - 지원한도: 개소당 보조 112,500천원 이내
 - 지원범위: 농산물 집하장 신축(증축) 및 개보수
 - 신축: 사업부지에 신규 또는 기존건물에 증축하는 경우
 - 개보수: 기존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
- * 개보수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한 경우 지원 가능

3. 신청 및 접수

- 가. 신청기간: 2025. 1. 15.(수) ~ 1. 31.(금)
- 나.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다. 접수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
- 라. 신청서류: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(붙임 참고)
- 마. 문의처: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☎ 064)710-3275

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- 심사기준: 심사표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적정 여부
- 결과 통보: 개별 통보



〈 유 의 사 항 〉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보조사업의 정산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(☎064-710-32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